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재나1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175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자 2019재나156 결정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377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487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소1553782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현민

피고(재심원고), 항소인A

변론 종결2019. 12. 13.

판결 선고2020. 2. 7.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소1553782 판결

환송_전_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48741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37725 판결

재심대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나46753 판결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622,038원 및 그 중 38,378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06,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2,159,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839,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2,142,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2,437,66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3.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7752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이 201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5378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로 이행되었다.

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2012. 4.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 2012다37725호).

다. 상고심 법원은 2014. 8.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8. '자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14. 11. 24. 피고에게, 2014. 12. 4.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4. 12. 9.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재심청구원인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성북구 B 임야 1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인 68㎡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위와 같은 점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이미 그 시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통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30일)이 경과되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피고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소액사건에 대한 판결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파기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의 부(父) 망 C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임야가 국유재산임이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것이고 피고는 C의 상속인이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망 C은 1964. 6. 15.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D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을 매수하고 1964. 7. 25.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대한민국은 D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C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1972. 4. 11. 확정된 사실(대한민국은 1973. 8. 30.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도 C은 이 사건 임야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91. 9. 6.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 C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중간 생략) 원고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D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 C과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상금 부과·징수를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음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판명된 1972. 4. 11. 이후부터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피고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주현

판사이의석

판사이준현